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가합574576(본소), 2021가합572331(반소) 판결
[구상권 청구의 소 · 구상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나2028513(본소), 2022나2028520(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가합57457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원고B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최남식, 조수정

피고(반소원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송재원

변론 종결 2022. 6. 16.

판결 선고 2022. 7.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726,912,000원, 원고 B에게 181,72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645,845,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원고 A은 2016. 2. 22.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가 E로부터 2,850,000,000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8. 1.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D과 원고 A은 아래와 같이 '연대채무자'라고 기재된 부분에 각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

제1조(당사자의 특정) 채권자 E은 2016. 2. 22. 2,850,000,000원을 채무자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한다. D, 원고 A은 연대채무자로 본 약정사항을 이행한다.

제2조(변제기한)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18. 1. 25.로 한다.

제3조(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이자는 연 8%로 매월 말일 지급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에는 피고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제5조(기한 이익의 상실 및 채무상환)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지급정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상태일 때
4.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5.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6. 피고가 주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E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날인부분 중 발췌]

나. 피고는 N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6. 2. 23. 위와 같이 차용한 돈 중 2,350,000,000원을 O에 직접 출자하였고, 나머지 500,000,000원을 한국산업은행에 예금하고 한국산업은행 앞으로 위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준 다음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에 출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O의 주식 47%를 보유하는 주주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7년 7월경 E로부터 20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2017. 11. 29. E에게 1,0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D, 원고 A 및 E은 2017. 12. 4. 아래와 같이 피고는 '연대채무자'로 기재된 D, 원고 A과 연대하여 P, E에게 차용금 합계 2,050,000,000원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배당금 2,4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확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제확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Q 작성 2017년 제1731호로 강제집행 인낙조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이하 채무자)는 P과 E(이하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배당금에 대해 D, 원고 A(이하 연대채무자)과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1. (미변제 차용금) 채무자는 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원금 3,050,000,000 중 2017. 11. 29. 변제완료한 1,000,000,000원을 제외한 미변제 차용금이 2,05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2. (배당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업 수익에 대한 배당금으로 2,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위 금원은 이해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변제기한)
가. 위 미변제 차용금 및 배당금에 대한 변제기한은 아래와 같다.
 - ① 차용금 200,000,000원 변제만료일 : 2017. 12. 29.
 - ② 차용금 1,850,000,000원 변제만료일 : 2019. 12. 31.
 - ③ 배당금 2,450,000,000원 변제만료일 : 2019. 12. 31.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서 변제기한으로 정한 '2018. 1. 25.'을 '2019. 12. 31.'로 변경한다.

[날인부분 중 발췌]

마. E은 2017. 12. 28. 이 사건 변제확약에 따라 20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이후 피고, D, 원고 A은 2018. 4. 4. P과 E에게 이 사건 변제확약에 따른 잔존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채권자 P, E 귀하

2017. 12. 4. 채무자 피고와 채권자 P 등 쌍방간에 작성된 이 사건 변제확약, 이를 원인으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2017. 12. 4. 공증인가 법무법인 Q 작성)와 관련하여 채무금 4,300,000,000원의 변제기한과 기한이익상실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연대채무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채무금 변제기한 및 기한이익상실) ① 이 사건 변제확약서 제3조에 정한 변제만료일 또는 변제기한 '2019. 12. 31.'을 '2019. 12. 31.로 정하되, 채무자 피고가 0에 출자한 사업이 종료되는 날이 변제만료일(또는 변제기한)보다 먼저 도래 시 위 사업이 종료되는 날 즉시'로 변경한다.

제3조(담보) 채무자 및 연대채무자와 피고 주주는 채무금 변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각 소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 총 주식을 변제기한까지 담보로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등'을 교부한다.

제5조(주주 원고 A의 무한책임 의무) 주주 원고 A은 채무금 변제 시 사업수익률이 떨어져 채권자 P에 대한 채무잔액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약정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잔액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한다.

[날인부분 중 발췌]

바. 피고와 피고의 주주이던 원고들(원고 A 40%, 원고 B 10%), D(30%), G(20%)은 2018. 4. 4. P,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들, D, G이 보유하는 각 피고의 주식을 P, E에게 근질권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내용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제1조(정의)

'담보주식'이라 함은 각 근질권설정자가 보유하는 차주(피고) 발행의 각 주식을 말하며, 제3조 제4항에 따라 근질권설정자가 추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추가 주식을 포함한다.

'피담보채무'라 함은 2017. 12. 4. 체결한 이 사건 변제확약에 따른 채무금 4,300,000,000원 상환 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차주 및 연대채무자가 근질권자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금전채무(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액, 일체의 비용 지급 채무를 포함함)를 말하며, 근질권자의 입장에서 '피담보채권'이라 부른다.

제2조(근질권의 설정)

(1) 각 근질권설정자는 차주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근질권설정자가 소유하는 담보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질권을 설정한다.

공동1순위	EP	4,300,000,000원
-------	----	----------------

제11조(대위변제) 근질권설정자는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근질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차주와 근질권자와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근질권자에게 앞서 행사하지 아니하고

근질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근질권자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하며, 또 근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근질권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근질권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로 한다.

[날인부분 중 발췌]

사. E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R 담당변호사 S은 2020. 5. 6. 원고들과 피고에게, 원고들이 근질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원고들의 피고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원고 A의 주식 가액을 726,912,000원, 원고 B의 주식 가액을 181,728,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근질권을 실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주식의 명의를 E로 명의개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아. P, E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3,391,360,000원¹⁾으로 하여 피고가 O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익금 및 배당금 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1. 1.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00041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O로부터 2021. 2.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 3,391,360,000원을 이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내지 3, 6,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 A이 형식상 연대채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E로부터 차용한 돈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차용하였던 것으로서 피고가 전액 사용하였던 점, 위 차용금이나 P, E에 대한 배당금은 당초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수익을 통하여 변제하기로 예정하였던 것인데 P, E이 피고를 장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상 근질권설정자들 중 원고들에 대하여만 질권을 실행하였는바, 이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 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된 피고의 회계장부는 피고가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변제할 채무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질권 실행을 통하여 공동 면책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 A에게 726,912,000원, 원고 B에게 181,72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11조에 의하면 피고가 P 및 E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원고들의 권한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변제확약 제5조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의 P 및 E에 대한 채무 잔액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이 사건 변제약정, 이 사건 확약 및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상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 A은 피고, D과 함께 연대채무자 관계에 있고, 연대채무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질권 실행에 따라 726,912,000원만을 공동 면책시킨 반면, 피고는 P, E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피고의 0에 대한 수익금 및 배당금 중 3,391,360,000원이 추심금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잔존 채무를 전액 변제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 A이 자신의 부담부분인 약 1,433,333,333원(= 이 사건 확약상 잔존 채무 4,300,000,000원 $\times$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원고 B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질권 실행에 따라 181,728,000원을 공동 면책시켰으나, 연대채무자인 피고, D, 원고 A에 대하여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60,576,000원(= 181,728,000원 $\times$ 1/3)으로 한정되어야 한다.2)

나.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11조 및 이 사건 변제확약 제5조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11조와 이 사건 변제확약 제5조는 그 문언상 원고 A 또는 원고들과 근질권자 또는 채권자인 P, E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피고가 P 및 E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등 권리의 행사를 금지한다거나 원고 A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A이 연대채무자인지 또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이 사건 변제약정, 이 사건 확약과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이라 한다)상 원고 A이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채무자'라고 기재된 부분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원고 A은 주채무자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통하여 E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피고가 O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이 사건 변제확약에 의하면 E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배당금을 지급할 기본적인 주체 또한 피고로 설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에 각 기재된 표현을 살펴보면, D, 원고 A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자'로 기재된 반면, 피고에 대하여는 '차주' 또는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와 D, 원고 A의 법적 지위가 서로 상이함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모두 채무자인 피고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D이나 원고 A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4) E로부터 차용금을 받고 E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주된 의사는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은 위 차용금 및 배당금에 대하여 피고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 보다는 피고를 위하여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제공할 의사였다고 판단된다.

(5) 피고는 2022. 4. 26.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2021. 1. 29. 원고 A에 대한 '잠정적 구상채권' 645,845,333원을 차변에 계상한 취지의 2021년 회계연도에 관한 계정별원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와 원고 A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연대채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의 원고 B의 구상금 범위 제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약정 등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를 주채무자로, 원고 A을 연대보증인으로 보는 이상, 원고 B가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 D, 원고 A에 대하여 각 균등하게 분할하여 행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 A에게 726,912,000원, 원고 B에게 181,72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질권 실행일 다음날인 202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 원고 A과 함께 연대채무자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질권 실행에 따라 원고 A은 726,912,000원, 원고 B는 181,728,000원을 각 공동 면책시켰고, 피고는 P, E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피고의 O에 대한 수익금 및 배당금 중 3,391,360,000원이 추심금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잔존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고 A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645,845,333원[= (4,300,000,000원 - 원고 B의 공동 면책 금액 181,728,000원) × 1/3 - 원고 A의 공동 면책 금액 726,9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을 피고와 연대채무자로 볼 수 없고 원고 A이 주채무자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판사유철희

판사정희림

1) 잔존 채무금 4,300,000,000원 중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질권 실행에 따른 변제금액 908,640,000원(= 726,912,000원 + 181,728,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 피고는 2020. 11.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 B와 T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184,7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B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는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예비적 상계항변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후 변론과정에서 현실적인 상계항변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